

판 결

사 건



원 고

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유

담당변호사 조효동

피 고



변 론 종 결

무변론

판 결 선 고



주 문

1. 피고는,

가. 원고 [REDACTED]에게 49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[REDACTED]부터 다 갚는 날까지
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,

나. 원고 [REDACTED]에게 49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[REDACTED]부터 다 갚는 날까지
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,

다. 원고 [REDACTED]에게 24,8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[REDACTED]부터 다 갚는 날까지
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,

라. 원고 [REDACTED]에게 16,8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[REDACTED]부터 다 갚는 날까지
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,

마. 원고 [REDACTED]에게 60,5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[REDACTED]부터 다 갚는 날까지
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,

바. 원고 [REDACTED]에게 30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[REDACTED]부터 다 갚는 날까지
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

각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